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개정 2023. 5. 25.>
■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 [別紙第63号書式] <改正2023年5月25日>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二輪自動車使用届書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行日時	처리 기간 즉시 処理期間 即時
소유자 所有者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휴대)전화번호 (携帯) 電話番号	
이륜자동차 二輪自動車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車名 (例 : デイスター250)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総排気量又は最大定格出力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使用本拠地 (住民登録地、法人等の本店又は支店)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48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99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届出書を提出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성명
申請人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特別自治市長・市長・郡守・区庁長又は邑・面・洞・出張所長 殿

첨부 서류 添付書類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所有権を証明する書類 (第2号から第4号までの書類及び「関税法施行令」第116条第2項に基づく輸入申告済証又はこれに代わる税関の証明書で所有権を証明できる場合は提出不要)	수수료 手数料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二輪自動車製作証 (新規で製作・組立を行った二輪自動車の場合のみ添付すること) 1部 3.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二輪自動車使用廃止証明書 (使用廃止した二輪自動車を再届出する場合のみ添付すること) 4.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実測確認書 (該当する場合のみ添付すること)	없음 なし

유의 사항
留意事項

-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二輪自動車は使用届を提出する必要がある、二輪自動車番号の指定を受けなければ運行できません。(「自動車管理法」第48条第1項)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 上記の事項に違反した場合は、関連する規定に基づき過料が科されます。(「自動車管理法」第84条第4項第18号)
-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携帯)電話番号は、届出人の二輪自動車管理に必要な事項に関する案内等の便宜を提供する目的で利用されますので、ご記入いただきて変更が生じた場合は管轄登録機関にお知らせください。但し、ご本人が望まない場合は、記入しなくても結構です。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